

『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11월 20일

나. 발 의 자 : 윤영철 김성현 김정곤 김정미 박주연 이명희(6명)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12월 4일

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윤영철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시정 질문과 관련하여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질문을 도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질문요지서 송부기한을 현행 24시간을 48시간(휴무토요일, 공휴일 제외)으로 변경(안 제72조제4항)
- 서면답변서 제출기한을 24시간(휴무토요일, 공휴일 제외)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 신설(안 제72조제4항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, 제71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대 회

○ 본 ‘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’은

- 시정 질문과 관련하여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시정 질문을 도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코자 함.

○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
- 질문요지서 송부기한 “24시간”에서 “48시간”으로 변경하였으며,
- 서면답변서 제출기한 “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”규정을 신설.

○ 검토결과

- 현행 규칙안은, 미리 의원이 시정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현행 질문요지서 송부시간으로는 집행기관의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가 어렵고, 답변내용이 시정 질문 당일 의석에 배부됨으로써 질문의원 및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위한 준비가 어려운 실정임.
-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질문요지서 집행기관 송부기간을 연장하고 서면답변서 제출기한을 신설함으로써 심도 있는 비판과 감시기능을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 가결